

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[창의트랙사업] 모집 공고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'상생협력재단')은 대·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「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(창의트랙사업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

※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'중기부') 「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」의 창의트랙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대·중소기업 등이 상호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

□ 사업 내용

-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·선정하여 지원

□ 추진 체계

구 분	주요 역할
총괄기관 (중기부)	▶ 사업 기본계획 수립, 국고보조금 교부, 사업 및 전담기관 관리 등

구분	주요 역할	
전담기관 (상생협력재단)	▶사업공고, 선정평가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·지원, 보조금 교부, 성과관리 등	
주관기업	▶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과제 운영을 총괄 수행하는 기업 - 협약체결, 참여기업 관리, 집행 관리, 과제 정산, 사후관리 등	
택 일	출연기업 (대기업 등)	▶과제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, 참여기업 선정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, 과제운영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(필요시) 등
	참여기업 (중소기업)	▶과제 공동참여, 사후관리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(필요시) 등

2. 지원내용

□ 지원 기간

- 협약일 ~ 협약 종료일

□ 지원 대상

- 출연기업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(참여기업)

□ 지원 내용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* (이하 ‘상생협력기금’)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제* 중 창의적이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과제 지원

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상생협력법’) 제20조의5에 따른 기금

** 「상생협력법」 제20조의5 제5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3조의4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사용 가능 용도에 부합하는 과제 ([붙임 2] 참조)

< 상생협력기금 지원 예시 >

지원분야	주요내용
해외진출	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진출지원 등 판로확대
창업기업	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, 교육 등 창업지원
생산성향상	시스템반도체미래차부품 산업 등 신기술,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
기술보호	공급망 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
복리증진	대·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, 협력사 복지지원 등 복리증진

- (지식확산) 대기업의 지식·기술·노하우(장비배치, 경영 기법 등) 등을 중소기업에 확산·적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과제 지원
 - * (예)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 진단 및 솔루션 제시 → 솔루션 집행 → 문제 해결
- (환경 변화 대응) 신산업·신시장 진출, 신규 일자리 창출, 산업안전 및 ESG 대응 등 경영 환경 변화에 창의적 해결 과제 지원
- (기타) 대·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

< 지원 유형별 예시 >

주요내용	
지식 확산	대기업의 지식·기술·노하우(장비배치, 경영기법 등)을 중소기업에 전수
	대기업의 경영기법, 관리시스템, 운영 프로세스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확산
	대기업의 생산기술, 공정기술, 특허, 설비 운영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고도화
	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관련 논문·학회지 등의 지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적용
	협력사를 대상으로 포럼·교육 운영을 통한 산업 동향, 혁신기법 공유로 현장 적용
업종	주요내용
자 동 차	내연기관 자동차 → 자율주행·전기차·탄소중립 등 미래차 연구개발
철강·화학	기존 제조공정 → 그린에너지 활용 제조공정 전환
건 설	노동집약적 건설공정 → 가상현실, 로봇 등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공정
유통	오프라인 중심 → 구독서비스, 플랫폼 중심 온라인 유통 전환
식품	기존 분야 생산 → 건강기능식품, 맞춤형 식품 솔루션 등 생산
전자	일반 가전 → AI, 헬스케어,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

* 위 표는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고 예시

□ 지원 조건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①출연기업과 ②참여기업(중소기업)이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 필수

- (①출연기업) 「상생협력법」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(대기업, 공공기관, 중소기업 등)

*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(winfis.win-win.or.kr)을 통한 출연신청, 과제신청, 기금 집행, 환수 등 기금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필요

- (②참여기업)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*으로 출연기업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**이 아닌 중소기업*

* 중소기업 여부 확인 :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

**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명기된 특수관계자 내역확인 등

- (주관기업) ①출연기업 또는 ②참여기업 중 창의트랙 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*하는 기업

* 사업비 집행 및 관리,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관련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

** 필요 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의 관리, 운영 등을 전담 수행 가능

□ 지원 규모

-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(국고보조금 50%, 상생협력기금 50%)

*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,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

- 15개 과제 내외 지원

*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3. 추진 절차



* 상기 추진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진도점검(현장방문)을 실시 가능

4. 과제 평가·선정 및 협약 체결

□ 신청 주체

- 주관기업 (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주관기업을 정함)

□ 과제 평가 및 선정 * 세부 일정은 신청 주관기업에 별도 안내

- (요건검토) 신청 자격, 제출 서류 등 검토
- (선정평가)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심사선정
 - (평가방법)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평가
 - * 선정 평가는 대면 평가가 원칙이며,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제책임자가 발표하고, 출연기업은 동반 참여

- (심사요소) 과제의 타당성 (50점) 및 사업성 (50점)을 종합적으로 심사
 - (타당성) ① 상호-원원·환경변화 대응·상생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, ② 사업목표의 적절성, ③ 참여 주체의 역할·노력, ④ 사업난이도 및 추진 적절성 등
 - (사업성) ① 중소기업 협업역량(지재권, 인증 등), ② 既 거래관계 개선 신규협업, ③ 예상 성과(매출액, 판로 등), ④ 성장·지속 가능성 (ESG) 등
 - (우대사항) ① 성과공유제 內 중소기업 제안 과제* (1점), ② 원원 아너스 선정 과제 (3점) 등 인정받은 우수사례 선정 기업 가점 (최대 3점)
 - * 성과공유 과제 중 구매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이 해결 방안을 제안한 과제로 상생협력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 제출

※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정부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□ 과제 협약 체결 * 자세한 사항은 과제 선정 이후 추가 안내 예정

- 전담기관(상생협력재단), 주관기업 간 협약체결

협약 시 필요사항

-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(12p 이내) 및 증빙서류
- 창의트랙사업 협약서
- 사업비 통장 총 2개(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국고보조금·상생협력기금)

5.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
- 신청 기간 : 2026년 2월 26일(목) ~ 3월 18일(수) 18시, 21일간
- 신청 방법 :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
 - * 제출서류 : e나라도움 또는 협력재단 (www.win-win.or.kr) 사업공고 첨부파일 확인

참고 e나라도움 사업 신청방법

-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에 회원가입
- ② 홈페이지 상단의 [공모사업 찾기]에서 '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(창의트랙사업)' 검색
- ③ 로그인 후 [공모신청 바로가기]를 클릭하여 [사업신청서 작성화면]으로 이동
- ④ [신청기관등록/사업내용등록] 내용 입력, 신청서(한글파일 및 PDF파일 각 1부) 등 제출서류 업로드 후 [신청서 제출] 클릭

※ 제출서류 목록

1. 창의트랙사업 신청서 및 별첨 서류
2. 기타 사업신청 참고자료 등

- 유의 사항
 - 주관기업은 「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(창의트랙사업) 운영 지침」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
 - *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 - 창의트랙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필요(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필요)
 - 허위 사실 기재, 신청서 작성 오류,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주관기업 책임으로 함
 - 과제 수행 시 부실·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 및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환수,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문의처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
(☎ 02-368-8971, 8746 / ✉ winwinct@win-win.or.kr)

붙임 1

사업비 구성 기준

[별표 1] 창의트랙사업 사업비 구성기준

목	세목	세부내역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○ 사무용품 구입비 -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* 범용성 물품 구입 불가
		○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
		○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- 사업 관련 상패 등의 제작비
		○ 소모품비 -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물품에 대한 구입비 - 자산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하나 필요시 전담기관과 협의 하여 사업비 반영 검토
		○ 공고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		○ 수수료 및 사용료 - 회계수수료,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 등
		○ 전문가활용비 - 현장조사, 통역 등 전문가 활용에 수반하는 비용 - 법률, 노무 등 자문료 - 원고료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- 사업추진 관련 회의 등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 검토비 - 외부강사료 등
공공요금 및 제세 (02)	○ 공공요금 - 사업추진 관련 우편요금 등	
임차료 (07)	○ 임차료 -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(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) 등	
재료비 (11)	○ 재료비 - 사업용 및 시험연구, 실험·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-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- 동물,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- 사료구입비	
일반 용역비 (14)	○ 일반용역비 -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, 컨설팅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○ 국내여비 -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
	국외여비 (02)	○ 국외여비 -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
업무 추진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○ 사업추진비 -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
연구 개발비 (260)	연구 개발비 (01)	○ 연구개발비 - 전산개발,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, 제품개발 등 지식기반의 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

< 상생협력법 >

제20조의5(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) ① 대·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,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(이하 “상생협력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 1.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
 2. 대·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
 3. 대·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
 4. 대·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
 5. 대·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 6. 상생협력기금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
 7. 그 밖에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< 상생협력법 시행령 >

제13조의4(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)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
2.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
3.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
4. 대·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
5. 대·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
6. 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7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
8.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
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원사업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선정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